

제 1224호
1985. 12. 5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남 모 현
편집인 : 공 보 관 이 광 우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제	보도국장	공보국장	공보관	공 보 관

시 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 817 호 : 주택개량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	3
제 818 호 :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 및 해제고시	3
제 819 호 :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결정 및 지적고시	4
제 820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5
제 821 호 : 도시계획사업(여객자동차정류장)변경시행허가	5
제 822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6
제 823 호 : 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(폐지)지적승인	6
제 824 호 :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및 변경결정	7
제 825 호 :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변경	7

< 이 면 계 속 >

구 분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972

제 826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8

◎ 공 고

제 732 호 :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(기간연기) 인가공고 8

제 733 호 : 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 9

제 735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 및 하수도) 실시계획공람공고 10

제 736 호 :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12

제 737 호 : 무교구역제 14 지구재개발사업공사완료 13

◎ 사 령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817 호

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

1. 건설부고시 제 459 호 ('84.11.17) 로 구역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8 호 ('85.3.5) 로 사업시행인가된 주택개량 재개발 대림구역제 1 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상 변경요인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 17 조 및 같은법시행가.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역

령 제 58 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 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 16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영등포구청 주택과와 대림구역 제 1 지구 재개발조합에 비치한다.

1985.12.5.

서울특별시장

구 분	기 인 가	변경인가	비 고
1. 사업의 명칭	대림구역제 1 지구재개발사업	좌 동	-
2. 위치	영등포. 대림3동 793-13번지일대	"	-
3. 면적	19,572㎡	19,562㎡	감 10㎡
4. 사업내용	아파트 13-15층 4동 591세대	좌 동	-
5. 인가년월일	1985. 3. 5.	1985.12.	-
6. 사업시행기간	'1985.3.5 - '87.12.31	좌 동	-
7. 사용토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명세	별 칩	좌 동	
8. 시행자	대림구역제 1 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	좌 동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818 호

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지정및해제고시

문화재 보호법 제 55 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7 조 및 동 보호조례 제 13 조 규정에 의거 서울

특별시 유형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 10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1985.12.5.

서울특별시장

1.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목록								
종 별	지정번호	명 칭	지정물건	소 재 지	구조및규모	관 리 자		
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	제 64 호	봉은사선불당	1 동	강남구삼성동 73 번지	목조와가 58 평	조계종 봉은사 주 지		
"	제 65 호	화계사대웅전	1 동	도봉구수유동 487 번지	목조와가 18 평	조계종 화계사 주 지		
"	제 66 호	홍천사극락 보 전	1 동	성북구돈암동 595 번지	목조와가 17 평	조계종 홍천사 주 지		
"	제 67 호	홍천사명부전	1 동	"	목조와가 11 평	"		
"	제 68 호	봉원사대웅전	1 동	서대문구봉원동 1 번지	목조와가 24 평	태고종 봉원사 주 지		
2.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해제 목록								
종 별	지정번호	명 칭	수 량	소 재 지	규 격	해 제 사 유		
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	제 58 호	수표석	1 기	세종대왕기념관	높이 약 3 m 폭 약 20 cm	85년 8월 보물 제 838호로 지정		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819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및지적승인</p> <p>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, 제 13 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및 제 7 조 2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</p> <p>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</p>				<p>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12.5. 서울특별시 장</p>		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(M)	연장(M)	기 점	종 점	비 고
당초 변경	소로 "	3 "		6 "	240 "	홍은동산 26-90 "	홍은동산 26-89 "	일부위치변경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20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12.6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- 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
- 2. 사업주체 : 우천건설(주) 대표이사 김성복
- 3. 사업시행지위 위치 및 내역
 - 가. 대지위치 : 강동구 천호동 산 43-2, 산 44-7, 산 46-4
 - 나. 대지면적 : 5,087㎡
 - 다. 용 도 : 연립주택
 - 라. 규 모 : 3층 4동 66세대 5,377.20㎡
- 4. 사업시행기간 : 1985.12-1986.8
첨부 : 1) 설계도서 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21 호

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 변경시행허가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5 호 (84.

7. 26) 및 동고시 제 657 (85.10. 2) 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 정류장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에 의거 변경시행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
1985.12.6.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변경전 : 강서구 신월동 545-3,6 호
변경전 : 강서구 신월동 545-3 ~ 6 호 (2필지 추가)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 정류장) 변경 시행허가
- 다. 허가사항 : 변경전 : 대지 1,804㎡
건물연면적 1,305.6㎡
변경후 : 대지 2,159.5㎡ (증 355.5㎡)
건물연면적 930㎡ (감 375.6㎡)
- 라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: 강서구 화곡동 596 화곡교통 (주)
- 마. 관계도면 : 별첨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822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.

1985.12.6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- 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
- 2. 사업주체 :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월동 524-1

(주) 동원주택건설 대표 : 이봉재

- 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
가. 위치 :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월동

- 97-5 의 4 필지
- 나. 면적 : 1,381.1 ㎡
- 다. 규모 : 연립주택 3층 1동 30 세대
- 4. 사업시행기간 : 1986.3.1-1986.12.31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823 호

도시계획시설 (시장) 변경 (폐지) 지적승인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748 호 (85. 11.1)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(시장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.
- 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12.6.

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시설 (시장) 변경 (폐지)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 모	비 고
기정	시 장	중구명동 1 가 53-1 의 4 필지	1015 ㎡	
변경	시 장	"	0	폐 지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24 호
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및변경결정
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1항 1호 나목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 결정하였기 같은 법제 1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 2. 관계 도면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 및 관할구청(강남, 관악, 서대문)도시정비과,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 1985.12.7.
 서울특별시장

- 시 설 조 서 -

순위	구분	등급	류별	폭원(m)	연장(m)	시 설	종 결	비 고
1	신설	소로	1	10	77	대로2류27호	을현동 295	
2	"	"	1	10	76	"	" 229-2	
3	"	"	2	8	125	"	지곡동 218-1	
4	"	"	2	8	550	"	" 420	
5	"	"	3	6	66	신림동산 197-31	신림동산 197-31	
6	기정	"	2	8	190	홍은동 212	홍은동 210-1	
	변경	"	1	10	190	"	"	폭원확장 및 의차변경
7	기정	"	2	8	58	홍은동 204-32	홍은동 203-1	
	변경	"	1	10	58	"	"	폭원확장

서울특별시고시제 825 호
도시계획사업(학교:단국대학교)
시행허가변경
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4 호(84.8.8)로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된 단국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와 제 2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와 용산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 1985.12.7.
 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용산구 한남동 산 8 일
 대
 나. 사업지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
 명칭 : 단국대학사설 확충
 다. 사업시행규모 : 변경없음
 라. 사업시행자주소 : 변경없음
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 1) 착수년월일 : 변경없음
 2) 준공예정일
 가) 당초 : 85.12.31
 나) 변경 : 86.12.31
 바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: 변경없음
 사. 사용할 토지 : 변경없음
 아. 토지소유자 : 변경없음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826 호
 도시계획시설 (학교) 변경결정및지적승인
 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를 도
 시계획법 제 12 조 및 13 조와 같은
 법 시행령 제 6 조 및 제 7 조의 2
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지적승
 인 하였기 같은 법 제 12 조 제 4
 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
 와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
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12.7
 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시설 (학교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

구 분	시 설 명	위	치	규 모 (㎡)	비 고
기 정	학 교	용산구 한남동	60 일대	140,100	
변 경	"	"	"	141,455	증 1,355 ㎡

공 고

○ 서울특별시공고제 732 호
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(기간연기)
 인 가 공 고

1.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영동 2,
 신당, 청량, 양재, 경인, 마포, 구로 및 가
 락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
 사업계획변경 (기간연기) 인가 하였기
 공고한다.
 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
 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
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개별 등
 지는 하지 아니하고 본 공고로 같
 음 한다.

1985.12.6
 서울특별시장

-사업계획변경(기간연기)내역-					
지구	인가면적 (㎡)	시행자	사업시행인가		비고
			기정	변경	
영동 2	13,071,858	서울특별시장	'71. 8. 24	'71. 8. 24	1년 연장
			'85.12.31	'86.12.31	
신당	429,752	"	'40.10.21	'40.10.21	"
	중 214,289		'85.12.31	'86.12.31	
청량	1,100,182	"	'40.10.21	'40.10.21	"
	중 99,054		'85.12.31	'86.12.31	
양재	154,839	"	'83.11.22	'83.11.22	"
			'85.12.31	'86.12.31	
경인	6,900,023	"	'68. 1. 18	'86. 1. 18	"
			'85.12.31	'86.12.31	
김포	4,706,334	"	'68. 1. 23	'68. 1. 23	2년 연장
			'85.12.31	'87.12.31	
구로	1,474,896	"	'79. 3. 29	'79. 3. 29	1년 연장
			'85.12.31	'86.12.31	
가락	7,452,003	"	'82. 3. 20	'82. 3. 20	2년 연장
			'85.12.31	'87.12.31	
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733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</p> <p>건설업법을 위반한 다음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 50 조제 2 항 2 호 및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면</p>	<p>허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5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12.5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	--

업종및면허번호	상 호	대표자	소 재 지	사 유	처분사항	근거법규
토공(02-26)	(주) 삼영 공영	이기원	중구수하동 24-1	도급한도액 초과, 재하 도급	영업정지 6개월 (’85.12.5 ~’86.6.4)	건설업법 제 50 조제 2 항 2 호 및 3 호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35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 및 하수도)
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3 호(’69.1.18) 로
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상도동210-
228 주변 도로개설공사건에 대하여
도시계획사업(도로 및 하수도)실시
계획 인가코자 도시계획법제 25 조의
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
공고한다.
2.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

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, 미수령
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
다.

3. 관련도서는 동작구청 주택과와 전
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, 건물 소
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가. 공람장소: 동작구청주택과, 전설관리과
나. 공람장소: 1985.12-1985.

1985.12.6

서울특별시장

공 랑 개 요

사업시행지	사업의종류 및 명칭	사 업 의 규 모	사 업 시행자	사업착수및 준공예정일	시설결정및 지적승인	비 고
동작구상도동 227-1-210 -399	상도동 210- 228 주변도 로개설공사	콘크리트포장 B=6 L=140m B=8 L=100m A=13.8a 옹벽H=1.5-5 L=186.5 하수도D=600 L=250	서울 특별시장	인 가 일 -’86.4.30	시설결정및 지적승인 서울특별시 고시제 3 호	

1. 수용 또는 사용토지, 건물의소재지,
지번, 지목 및 소유권 명세: 생략
2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

- 용법 제4 조3항의 관계인주소, 성명: 생략
3. 기타사항: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
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.

토 지 조 서							
일련 번호	소재지번	지목	지적	전입 면적	실제이용 상 황	소유자주소성명	
						관계인주소성명	
1	상도4동228-13	대	231	68	도	성북동 1가 35	홍정희외 1인
2	228-21	"	47	47	도	상도동 228-5	한상남외 1인
3	227-24	"	209	209	대	상도동 227-1	이종각
4	산65-164	임	668	608	알	남대문로 3가 20-1	이단별외 2인
5	210-290	대	403	403	대		
6	215-43	구	105	105	도	새울	
7	210-432	대	3	3	대	상도동 210-399	양숙희
8	210-433	"	14	14	"		
9	210-256	도	1,141	305	도	남대문로 3가 20-1	이단별외 2인
들 건 조 서							
일련 번호	소재지번	물건의 종류	구조및 구격	수 량 (㎡)	실제이용 상 황	소유자주소성명	
						관계인주소성명	
1	상도4동227-1	주택	연화도 스퀘어	40		상도동 227-1	이종각
2	산 65	"	세멘트	34		산 65 17/5	윤승재
3	"	"	"	19		" 7/6	이윤남
4	"	"	"	20		" 7/7	임찬분
5	"	"	"	3		" 7/7	김석기
6	"	"	"	19		" 17/6	유재구
7	"	"	"	31		" 17/5	김천기
8	"	"	"	10		" 17/5	박분순
9	"	"	"	53		" 17/1	오영기
10	"	"	"	48		" 17/3	이강호
11	"	"	"	3		"	이영수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36 호

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

1. 하수도법 제 6 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(관악구청) 인가 84-21, 85-1, 2, 3, 4, 5, 6, 8-13, 16-18, 20-29 호로 설치 인가된 공공하수도 설치 (변경폐지) 인가된 공공하수도 설치 (변경폐지) 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고 및 공람한다.
2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3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공고로 가름한다.

1985. 12. 6.

서울특별시강

공고 및 공람 개요

- 가. 사용개시년월일 : 85.12.6.
- 나. 배수구역 : 하수관망도 참조
- 다. 사용을 개시 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

- 신림 1 동 1626-1 ~ 1628-42
- 신림 2 동 408-121 ~ 408-10
- 신림 3 동 산 104
- 봉천 7 동 218-22 ~ 222-2
- " 196-53 ~ 215-20

- 신림 3 동 610-390 ~ 612-17
- 봉천 7 동 226 ~ 228-48 (분류식)
- 봉천 8 동 1526-7 ~ 1527-21
- 신림 9 동 235-29 ~ 237-27
- 신림본동 412-77 ~ 409-190
- 신림 2 동 103-519 ~ 103-75
- " 110-70 ~ 116-20
- 남현동 1073-3 ~ 1073-2
- 봉천 9 동 635-485 ~ 635-175
- " 635-476 ~ 635-470
- " 635-243 ~ 635-252
- 봉천본동 463-463 ~ 459-67
- 봉천 7 동 196-240 ~ 1633-30
- " 1636-11 ~ 1633-35
- 신림 3 동 714-4 ~ 715-4
- 봉천 1 동 715-4 ~ 721-1
- 봉천 6 동 1691-1 ~ 1691-33
- " 1691-3 ~ 1692-12
- " 28-25 ~ 65-4
- 봉천 1 동산 132-682
- " 1511-38 ~ 689-5
- 봉천 10 동 886-65 ~ 886-60
- " 871-44 ~ 87-76
- " 56-217 ~ 860-13
- 봉천본동 500 ~ 503-3
- " 910-1 ~ 910-24
- " 925-1 ~ 925-11
- 신림 7 동 675-327 ~ 675-261
- 신림 1 동 1629-89 ~ 1629-14
- 신림 3 동 661-68 ~ 661-49
- 남현동 602-271 ~ 602-183
- 봉천 6 동 산 81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림 9 동 259-7 ~ 1516-4 • 신림 11 동 1569-9 ~ 1570-10 • 신림 4 동 1432-53 ~ 1432-4 • 신림 6 동 378-27 ~ 378-25 • 신림 8 동 1666-8 ~ 1666-16 • 봉천 10 동 457-364 ~ 164-1 • 신림본동 10-302 ~ 10-356 <p>라.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별: 합류식 (봉천 7 동 226 ~ 228-48:분류식)</p> <p>마. 하수관망도 비치장소: 관악구청 토목과</p> 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736 호</p> <p>무교구역제 14 지구재개발사업공사완료</p> <p>서울특별시고시제 439 호 (81.12.21) 로 시행인가된 무교구역제 14 지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재개발 법제 48 조 제 3 항 규정에 의거 다</p>	<p>음과 같이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 . 12 . 7 . 서울특별시장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의명칭 : 무교구역제 14 지구 재개발사업 2. 시행구역 : 중구태평로 1 가 25 번지 3. 시행면적 : 7,435.7 ㎡ 4. 시행자 주소, 성명 주소 : 중구태평로 1 가 25 번지 성명 : 서울신문사 사장 이우세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홍두표 5. 완료내역 가. 토지 면적 : 7,228.7 ㎡ 공공용지 : 707 ㎡ (도로) 나. 건물 건축면적 : 2,125.59 ㎡ 연면적 : 59,004.19 ㎡ 층수 : 지상 22층 (옥탑 2개층포함), 지하 4층 주용도 : 업무 및 판매시설 6. 준공도서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비치
--	---

사 령

◎ 1985 년 12 월 4 일자 령제 442 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위	직급
김광개	총무처 소방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'85.8.9 자 감봉 3월 처분을 동일자로 감봉 1월로 변경함.	관악구	수도공사 과장	지방토목기과

◎ 1985 년 12 월 5 일자		명제 444 호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김일근	동작구 (85.12.5-85.2.4 까지)	동작구공원녹지과장	지방농림기과
김태호	"	구로구시흥5동	지방행정주사
주명준	"	공원과	지방농림기사
김창환	"	동작구	지방행정서기
김정호	"	은평구	지방농림기원
김동욱	"	동작구	지방전공
김종열	"	"	지방감시원
김규환	"	"	지방청부
김철수	"	"	"
신병문	"	"	지방운전원
임갑현	"	영등포구	지방감시원
김성희	"	"	지방원정
이인숙	"	"	지방청부
이기홍	"	구로구	지방감시원
정규수	"	"	지방청부
남규백	"	관악구	"
김원근	"	남산공원관리사무소	지방원정
◎ 1985 년 12 월 6 일자		명제 445 호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정세백	내무국 근무를 명함. 정부합동민원실과전근무를 명함. (85.12.7-'86.12.6)	올림픽준비단관광담당관	지방행정주사
정연진	"	전설관리국건축지도과	지방건축기사
서울특별시			